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이 폐지·삭제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변경·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안 제1조,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13호, 제20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6년 12월 31일

다. 명칭 변경(안 제5조제5호, 안 제5장)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개정) 벤처투자조합

라. 기금관리공무원 변경(안 제27조제1호, 제2호)

(현행) 기업지원과장 → (개정) 업무담당과장

(현행) 기업지원담당 → (개정) 업무담당계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8.20.),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제142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한다.

제20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을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을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회 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 -----. 6.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

<u>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u>	<u>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u>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3. -----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u>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u>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5. <u>벤처투자조합</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u>	<u>제5장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u>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제20조(지원대상)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u>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u> 따 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u>기업지원과장</u> 2. 기금출납원 : <u>기업지원담당</u>	<u>법률」 제71조제4항</u>----- -----.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 ----- -----. 1. ----- <u>업무담당과장</u> 2. ----- <u>업무담당계장</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③ ~ ⑥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⑩ 생략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이 재 욱
	담 당 자	조 은 영 (480-6138)